#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663

발의연월일: 2024. 11. 18.

발 의 자: 민홍철·문대림·한준호

김정호 • 이학영 • 김준혁

문진석 · 김문수 · 백혜련

허성무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지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한편, 해당 시행령은 농지 소재지를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인으로 하여금 농지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농지법」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소재지의 조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5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변경하여 농지 소재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농지 소재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5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4. 경작 개시 당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       |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        |
| 득세의 감면) ① <u>농지 소재지</u> | 득세의 감면) ① <u>다음 각 호의</u> |
| 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         |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u>    |
| 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        |                          |
| 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         |                          |
| 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         |                          |
| 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                          |
|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                          |
|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                          |
|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         |                          |
| 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                          |
|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        |                          |
| 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                          |
|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                          |
|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        |                          |
| 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        |                          |
|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                          |
| 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                          |
|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        |                          |
| 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                          |
|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        |                          |

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 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 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br> |
|------|
| <br> |
|      |

-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 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구 안의 지역
-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5 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4. 경작 개시 당시에는 제1호부 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 편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

|           | <u>게 된 지역</u> |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